

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전공고

방송통신위원회는 “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”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를 합니다.

1. 사업목적

- ▶ 거점국 정부와의 쌍무협력 협정에 규정된 합의사항 (방송분야협력-공동제작) 이행을 통한 국내방송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
- ▶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체결국 방송국과 국내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국내 방송 관련 산업(인력, 기술, 장비 등)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

2. 신청대상

- ▶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방송 사업자
- ▶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

3. 공동제작 대상국

- ▶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(총 33개국)
 - EFTA 4개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EU 27개국
 - ※ EU 27개국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체코공화국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

4. 지원내용

- ▶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(법인 포함)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
 - ※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(자체인력 인건비,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)
- ▶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
- ▶ 공동제작 유형 : 교환형, 공동작업형을 대상으로 함.
 - ※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
- ▶ EFTA 4개국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EU 27개국의 공동제작 조건 준수

5. 지원규모 및 원칙

- ▶ 총○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억원 이내, 1사업자당 연간 총 4억원 이내(2편 이내)
 -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 - 제작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가능
- ▶ 제작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지정된 일자(11월30일)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

▶ 재원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

6. 지원대상 선정

▶ 방송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

- 양 국가간 공동소재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 - 공동제작 프로그램 대상국 참여비율(현금·현물 등)이 높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 - 공동제작 대상국중 기 참여국가를 제외한 신규국가와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- ※ '09년~'12년 공동제작 참여국가 : 싱가포르, 캄보디아, 노르웨이, 스위스, 벨기에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

▶ 심사결과 : 심사 후 해당 사업자 개별통보

7. 신청방법

▶ 제출서류

- ①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
- ② 사업수행계획서
- ③ 사업자현황자료
- 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
- ⑤ 방송사업 허가·승인·등록증 사본 1부
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⑦ 2012년 재무제표 사본 1부

8. 기타사항

▶ '13년 1월중에 정식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, 향후 계획에 따라 사전공고와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2012년 10월

방송통신위원회

붙임 : 공동제작 대상국가별 주요내용

[EFTA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]

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

-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% 이상이어야 함
-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창의적 기여를 하여야 함
- 제작물 및 재제작물 복사본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,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함

② 언어

-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함.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가능하며,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포함될 수 있음
-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 작업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되, 이와 다르게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

[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]

① 기여비율

-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% 이상이어야 함
-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20%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
- ※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 슈타인, 캄보디아, EU27개국) 및 싱가포르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

② 제작 참여 인력

-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,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

③ 제작

-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, 싱가포르, 제3국에서 진행하되,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.
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
-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%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, 제작된 것이어야 함

④ 사운드 트랙
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
- 내레이션, 더빙,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,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

⑤ 공동제작 명시
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'한국-싱가포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' 또는 '싱가포르-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'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

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

-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
-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
-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
-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

[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]

① 기여비율

-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10% 이상이어야 함
-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10%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
- ※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싱가포르, EU27개국) 및 캄보디아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

② 제작 참여 인력

-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,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

③ 제작

-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, 캄보디아, 제3국에서 진행하되,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.
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
-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%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, 제작된 것이어야 함

④ 사운드 트랙
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
- 내레이션, 더빙,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,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

⑤ 공동제작 명시

-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'한국-캄보디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' 또는 '캄보디아-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'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

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

-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
-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
-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
-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

[EU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]

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

- 우리나라 제작자(모두 합하여)와 EU 제작자(모두 합하여)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30% 이상(애니메이션 35%이상)이어야 함
 - ※ EU는 2개국 이상 참여(애니메이션은 3개국이상)하여야 하며, 1개국이 10%이상 투자해야 함
- 기술적 예술적 기여는 투자와 비교하여 20%이내(애니메이션은 10%이내)여야 하며, 총 기여의 70% 이내(애니메이션은 65% 이내)이어야 함
-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,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대 20%까지 가능함

② 제작 참여 인력

-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이어야 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해야함